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상묵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2201

발의년월일 : 2017년 10월 31일
발 의 자 : 이상묵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광수(노원), 진두생, 김제리, 이숙자, 강성언, 박중화, 주찬식, 문형주, 김구현, 김경자(양천), 이정훈 의원(11명)

1. 제안 이유

지진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대피소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 골자

가.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(안 제43조의2).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3조의2(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)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